

2023년 중소기업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물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중소기업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4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1

모집개요

가. 사업목적 : 중소기업물류단체의 조직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점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물류 활성화 도모

나. 선정규모 : 전국단위 1개 단체, 지역단위 5개 단체

다. 지원규모 : 총 730백만원*

* 전국단위 230백만원×1개 단체, 지역단위 각 100백만원×5개 단체

라. 신청대상 : 전국단위* 또는 지역단위** 중소기업물류단체***

*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

**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의2에 따른 시, 군, 구를 1개 이상 관할하는 단체

**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물류단체 또는 「소상공인법」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

마. 신청기간 : '23. 4. 14.(금) ~ '23. 5. 4.(목) 17:00까지

바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부터 '23. 11. 30.(목)까지

*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가.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

- (경영개선 및 교육) 조직 강화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, 회원 교육, 성과 워크숍 등 지원
 - (전담 매니저) 전국단위 조직화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
 - * 근로계약 체결, 원천징수,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
 - **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주요역할에 따른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
 - (회원 교육) 점주 경영마인드 개선 교육, 점포경영기법 교육,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,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
 - (성과 워크숍) 사업성과 공유 및 향후 중소유통물류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
- (공동구매 행사) 전국단위 공동구매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, 현수막, 전단지, 사은품 제작 등 지원(1회 이상 추진)
 - (홍보) 공동구매 행사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광고비용, 온라인 홍보 이미지 제작, 오프라인 전단지 제작 등
 - * 행사 이름, 행사기간, 판매상품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
 - (현수막) 행사 이름, 행사기간을 표기한 현수막 제작
 - * 행사 참여 확인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점포에 현수막 각 1개 이상 설치 필수
 - (사은품) 공동구매 행사 활성화를 위한 판촉용 사은품 제작
- (상품동향 제공)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소비 트렌드, 최신 상품 동향 등 회원 대상 자료 제공을 위한 기획 및 인쇄비용

- (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) 경쟁력 있는 전국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통합 품평회 추진 및 홍보
 - (상품 모집) 전국 물류센터에 입고 및 동네상점에서 판매 가능한 지역 우수상품 발굴·모집에 소요되는 비용(설명회, 팜플렛 제작 등)
 - (통합 품평회) 지방자치단체, 지역 물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상품 발굴·모집 후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진행하여 ‘최종 우수상품’으로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2회 이상 추진)
 - * 최종 선정된 상품은 물류센터 납품이 가능한 정도의 생산규모를 갖추고, 동네상점에서 판매가능한 수준의 상품성을 보유하여야 함
 - (상품화) 발굴·모집한 상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BI 개발, 상품 및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원(선택사항)
 - * 상품화를 수행할 전문업체에 비용 지급
 - ** (예시) 품평회에서 최종 선정된 A사업자의 상품 디자인 개선을 지원할 경우, A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업체로 지급
 - (발굴상품 안내) 발굴·모집한 상품의 전국단위 공급 및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정보 안내 브로슈어, 카탈로그 제작 비용 지원
- (물류비 지원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, 차량임차료, 위탁배송비, 차량운전자 인건비 등 지원(선택사항)
 - (물류운영) 공동구매 행사 상품 및 발굴·모집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와 차량임차료 또는 위탁배송비 지원
 - (배송인력) 공동구매 행사 상품 및 발굴·모집상품 배송을 위해 차량운행·배송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인건비 지원
 - * 동 사업 수행 참여율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원
 - **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참여단체 또는 회원사 소속(4대 사회보험 가입)이어야 함

< ①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 >

지원항목		지원내용	지원한도	
조직화	경영개선 및 교육지원	○ (전담 매니저) 경영개선,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* 자기부담금 20%이상, 지원한도 1인 월 2백만원 이내 ○ (회원 교육) 경영마인드 및 점포경영기법 개선,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,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○ (성과 워크숍) 전국 조직화 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	60백만원 이내	
	공동구매 행사	○ (전국단위 행사) 전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(1회 이상) - 지역신문 광고, 홍보 현수막, 전단지 제작 지원 - 행사 사은품 제작 지원 * 개당 2천원 이내(비매품 표기 필수) 및 자기부담금 10% 이상	70백만원 이내	
	상품동향 제공	○ (정보 제공) 최신 유통물류관련 정보 수집 및 회원 대상 자료 제공을 위한 제작비 지원	30백만원 이내	
거점물류	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	○ (상품 모집) 지역 우수상품 모집활동 비용 ○ (통합 품평회) 최종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 ○ (상품화) 발굴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(선택사항) *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기부담금 10%이상 부담 ○ (발굴상품 안내)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제공할 상품정보 안내·홍보물 제작	70백만원 이내	
		물류비 지원 (선택사항)	○ (물류운영) 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, 차량임차료, 위탁배송비 등 ○ (배송인력) 상품 배송과정에 소요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	50백만원 이내
			국고보조금 총 지원한도 : 230백만원	

*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외 기타사항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 필수

나.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

- (경영개선 및 교육) 지역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, 회원 교육 등 지원
- (전담 매니저) 지역단위 조직화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
 - * 근로계약 체결, 원천징수,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
 - **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주요역할에 따른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
- (회원 교육) 전문인력을 활용한 점포 운영 역량 강화 교육,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 지원

- (공동구매 행사) 지역단위 공동구매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, 현수막, 전단지, 사은품 제작 등 지원(2회 이상 추진)
 - (홍보) 공동구매 행사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광고비용, 온라인 홍보 이미지 제작, 오프라인 전단지 제작 등
 - * 행사 이름, 행사기간, 판매상품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
 - (현수막) 행사 이름, 행사기간을 표기한 현수막 제작
 - * 행사 참여 확인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점포에 현수막 각 1개 이상 설치 필수
 - (사은품) 공동구매 행사 활성화를 위한 판촉용 사은품 제작
- (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)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상품 품평회 추진 및 홍보
 - (상품 모집) 물류센터에 입고 및 동네상점에서 판매 가능한 지역 우수상품 발굴·모집에 소요되는 비용(설명회, 팜플렛 제작 등)
 - (상품 품평회) 지방자치단체, 지역 생산자 등과 협력하여 지역 상품 발굴·모집 후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진행하여 ‘최종 우수상품’으로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1회 이상 추진)
 - * 최종 선정된 상품은 물류센터 납품이 가능한 정도의 생산규모를 갖추고, 동네상점에서 판매가능한 수준의 상품성을 보유하여야 함
 - (상품화) 발굴·모집한 상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BI 개발, 상품 및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원(선택사항)
 - * 상품화를 수행할 전문업체에 비용 지급
 - ** (예시) 품평회에서 최종 선정된 A사업자의 상품 디자인 개선을 지원할 경우, A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업체로 지급
 - (발굴상품 안내) 발굴·모집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정보 안내 브로슈어, 카탈로그 제작 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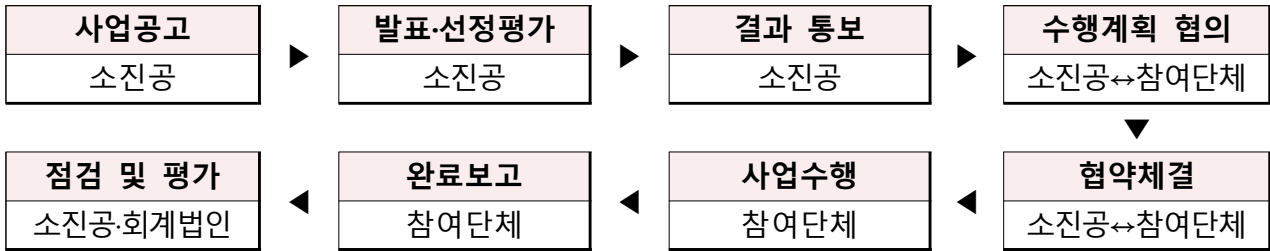
- (물류비 지원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, 차량임차료, 위탁배송비, 차량운전자 인건비 등 지원(선택사항)
- (물류운영) 공동구매 행사 상품 및 발굴·모집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와 차량임차료 또는 위탁배송비 지원
- (배송인력) 공동구매 행사 상품 및 발굴·모집상품 배송을 위해 차량운행·배송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인건비 지원
- * 동 사업 수행 참여율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원
- **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참여단체 소속(4대 사회보험 가입)이어야 함

< ②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 >

지원항목		지원내용	지원한도
조직화	경영개선 및 교육지원	○ (전담 매니저) 경영개선,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* 자기부담금 20%이상, 지원한도 1인 월 2백만원 이내 ○ (회원 교육) 슈퍼바이저를 통한 회원사(동네상점) 상품 최적화,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및 상품 진열 방안 등 교육,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 추진	30백만원 이내
	공동구매 행사	○ (지역단위 행사) 지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(2회 이상) - 지역신문 광고, 홍보 현수막, 전단지 제작 지원 - 행사 사은품 제작 지원 * 개당 2천원 이내(비매품 표기 필수) 및 자기부담금 10% 이상	40백만원 이내
거점물류	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	○ (상품 모집) 지역 우수상품 모집활동 비용	30백만원 이내
		○ (상품 품평회) 최종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	
		○ (상품화) 발굴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(선택사항) *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기부담금 10%이상 부담	
	물류비 지원 (선택사항)	○ (발굴상품 안내)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제공할 상품정보 안내·홍보물 제작	30백만원 이내
○ (물류운영) 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, 차량임차료, 위탁배송비 등 ○ (배송인력) 상품 배송과정에 소요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			
국고보조금 총 지원한도 : 100백만원			

*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외 기타사항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 필수

다. 추진 절차



3

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대상 : 전국단위* 또는 지역단위** 중소유통물류단체***

*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

**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의2에 따른 시, 군, 구를 1개 이상 관할하는 단체

**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「소상공인법」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

< 신청제외 대상 >

-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신청단체 또는 대표자가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조치 중인 경우

나. 신청기간 : '23. 4. 14.(금)~5. 4.(목) 17:00까지

다. 신청방법

- e나라도움 홈페이지(gosims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 사용

라. 제출서류

제출서류	부수	비고
① 참여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사업 참여 협약서	각 1부	
② 사업자등록증명	1부	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	1부	
④ 사업 총괄 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	각 1부	
⑤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	각 1부	대표자, 사업 총괄 담당자
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	각 1부	
⑦ (국세)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	유효기간 확인 필수
⑧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	1부	최근 3년 이내 설립한 단체는 설립년도부터 최근 시점까지 제출
⑨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1부	
⑩ 발표자료(ppt, pdf 등)	1부	글꼴 미지원 등 유의

5

평가 및 선정방법

가. 평가대상 : 신청기간 내에 e나라도움 홈페이지(gosims.go.kr)를 통해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 완료한 단체

나. 평가방법 :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단체의 발표를 듣고 질의를 통해 평가

-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단체 대표자 또는 사업 총괄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
 - * 사업 총괄 담당자는 공고일 이전 신청기관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,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- 사업추진 실효성, 지속성, 추진의지,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

-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
- 평가에 참석하지 않거나 직접 발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탈락 처리

다. 선정방법

-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
- *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 우선 선정

라. 협약체결

-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·보완 후 협약체결
- 협약체결 전, 선정단체는 선정단체 명의의 사업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

6

기타 사항

가. 유의사항

- 지원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, 단체(대표자)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,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경우,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선정·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
- * 선정·협약 취소 시, 선정평가 차순위 단체를 선정·협약

- 신청서류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 후 제출해야 함
-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,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및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사업등록, 사업비 교부, 집행, 정산, 반납, 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 이행해야 함
- 참여단체는 사업비(정부지원금)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비용은 참여단체가 별도 부담함*
- * 참여단체 사업비 내 편성·집행 불가
- 사업비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감될 수 있으며,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지침 및 보조금법, 국가계약법 등을 따라야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
- 공단은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 목적에 따른 별도 성과측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
- 동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
나. 문의처

- 사업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(042-363-7746)
- 신청시스템 문의 : e나라도움(1670-9595)

◆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◆

- (일시) 2023. 4. 18.(화) 14:00~16:00
- (장소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대전 중구 보문로 246) 2층 2-1 회의실
- (신청) 참석희망자 소속/성명/직위/연락처를 utong@semas.or.kr로 메일 송부